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2025. 5. 26.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. 5. 29.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-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에 따라 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 대비 20% 초과하여 변경되었음.
-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의 규정¹⁾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전년도(2024년)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상 ‘예치금 회수’ 금액이 11억 6천 2백만원에서 19억 8천 7백만원으로 8억 2천 5백만원 증가하였고, ‘보조금반환수입’ 금액이 기존 1천 3백만원에서 6천 8백만원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으로 5천 5백만원 증가하였음.

-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일반예치금을 8억 8천만원 증액함에 따라 ‘재무활동’ 금액이 제329회 임시회 의결 대비 6억 7천 4백만원에서 14억 9천 9백만원으로 8억 2천 5백만원 증가하여 122.3% 변경되었음.

〈 기금운용계획 변경 상세 내역 〉

[수입계획]

(단위 : 천원)

장/관/항/목	당 초	2차 변경 (A)	4차 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2,873,441	7,873,441	8,752,966	879,525	11.2%
세외수입	110,898	110,898	165,762	54,864	49.5%
경상적세외수입	98,177	98,177	98,177	-	-
이자수입	98,177	98,177	98,177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98,000	98,000	98,000	-	-
기타이자수입	177	177	177	-	-
임시적세외수입	12,721	12,721	67,585	54,864	431.3%
보조금반환수입	12,721	12,721	67,585	54,864	431.3%
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	2,443	2,443	4,449	2,006	82.1%
위탁비반환수입	10,278	10,278	63,136	52,858	514.3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2,762,543	7,762,543	8,587,204	824,661	10.6%
보전수입등	1,162,543	1,162,543	1,987,204	824,661	70.9%
예치금회수	1,162,543	1,162,543	1,987,204	824,661	70.9%
예치금회수	1,162,543	1,162,543	1,987,204	824,661	70.9%
내부거래	1,600,000	6,600,000	6,600,000	-	-
예탁금 및 예수금	-	5,000,000	5,000,000	-	-
예수금수입	-	5,000,000	5,000,000	-	-
전입금	1,600,000	1,600,000	1,600,000	-	-

장/관/항/목	당 초	2차 변경 (A)	4차 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기타회계전입금	1,600,000	1,600,000	1,600,000	-	-

[지출계획]

(단위 : 천원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	1차변경	2차변경	3차변경 (A)	4차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합 계	2,873,441	2,873,441	7,873,441	7,873,441	8,752,966	879,525	11.2%
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	2,136,400	2,196,400	7,196,400	7,251,400	7,251,400	-	-
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	2,136,400	2,196,400	7,196,400	7,196,400	7,251,400	-	-
청소년 역사문화교류 사업	351,600	351,600	351,600	351,600	351,600	-	-
타 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	1,000,000	1,000,000	6,000,000	6,000,000	6,000,000	-	-
타 시도 연계 MICE 공동마케팅 운영	277,000	277,000	277,000	277,000	277,000	-	-
랜선 나눔 캠퍼스 운영	472,800	472,800	472,800	472,800	472,800	-	-
약자와 동행하는 농촌 힐링 지원사업	35,000	35,000	35,000	35,000	35,000	-	-
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서울정원 조성	-	60,000	60,000	60,000	60,000	-	-
산불 피해지역 희망 장터 운영	-	-	-	55,000	55,000	-	-
재무활동	734,041	674,041	674,041	619,041	1,498,566	879,525 (824,525)	142.1% (122.3%)
내부거래지출	-	-	-	38,576	38,576	-	-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	-	-	-	38,576	38,576	-	-
예수금 원리금 상환 (이자상환)	-	-	-	38,576	38,576	-	-
보전지출	734,041	674,041	674,041	580,465	1,459,990	879,525 (785,949)	151.5% (116.6%)
여유자금 예치	734,041	674,041	674,041	580,465	1,459,990	879,525 (785,949)	151.5% (116.6%)
일반예치금	734,041	674,041	674,041	580,465	1,459,990	879,525 (785,949)	151.5% (116.6%)
행정운영경비	3,000	3,000	3,000	3,000	3,000	-	-
기본경비	3,000	3,000	3,000	3,000	3,000	-	-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	1차변경	2차변경	3차변경 (A)	4차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기금관리비	3,000	3,000	3,000	3,000	3,000	-	-

※ () : 최종 의회 의결액(2차 변경, 제329회 임시회) 대비 증감

4. 검토 의견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8억 8천만원(예치금 회수 8억 2천 5백만원, 보조금반환수입 5천 5백만원)을 ‘수입계획’에 반영하고, ‘지출계획’에 연동하여 증액(예치금 8억 8천만원)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.

〈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〉

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증 감
계	7,873	8,753	880
전 입 금	1,600	1,600	-
예수금수입	5,000	5,000	-
이 자 수 입	98	98	-
기 타 수 입	13	68	55
예치금회수	1,162	1,987	825

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증 감
계	7,873	8,753	880
비 용 자 성 사 업 비	7,251	7,251	-
기 본 경 비	3	3	-
예 수 금 원리금상환	39	39	-
예 치 금	580	1,460	880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에서는 기금운영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‘재무활동’ 금액을 기존 의회 의결(제329회 임시회) 대비 6억 7천 4백만원에서 14억 9천 9백만원으로 122.3%(8억 2천 5백만원) 증액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

의결이 필요한 사안임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○ 다만, 예치금 회수금액 증가는 ‘다른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구호지원’ 미집행(8억원), 일반사업비 미집행(2천 1백만원) 등에 따른 것으로,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한 집행잔액 최소화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국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< 2024년 사업비 미집행 현황 >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예산현액	집행액 (집행률)	집행 잔액	미집행 사유
합 계	2,074,800	1,253,865 (60.4%)	820,935	
청소년 역사 문화교류사업 (청소년정책과)	300,000	300,000 (100%)	0	◦ 민간보조사업으로 전액 집행 (잔액 차년도 반납)
타지방자치단체 재해·재난 구호지원 (대외협력과)	1,000,000	200,000 (20%)	800,000	◦ 타지자체 재해재난 발생 시 복 구지원하는 예비비적 사업으로 사전에 불용예상액 산정 불가
타시도 연계 MICE 공동 마케팅 운영 (관광정책과)	250,000	250,000 (100%)	0	◦ 위탁사업으로 전액 집행 (잔액 차년도 반납)

사 업 명	예산현액	집행액 (집행률)	집행 잔액	미집행 사유
랜선 나눔 캠퍼스 (대외협력과)	472,800	454,605 (96.2%)	18,195	◦ 대학생 멘토 중도포기자 발생 에 따른 활동비 잔액
약자와 동행하는 농촌힐링 지원사업 (대외협력과)	35,000	32,770 (93.6%)	2,230	◦ 버스 임차비 등 집행잔액
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시군 교류행사 (대외협력과)	17,000	16,490 (97%)	510	◦ 사업 운영 용역계약 낙찰차액

○ 또한, 예치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별 지출 일정을 감안하여,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최대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□ 예치금 관리현황 (2025. 5. 31. 기준)

○ 시금고 예치 현황

(단위 : 천원)

총 액	시금고 예치금		
	공금예금	정기예금	수시입출금식 예금
3,484,350	394,350	1,900,000	1,190,000

○ 예금상품 가입 내역

거래은행	계정과목	금 액(천원)	기 간	이 율(%)
신한은행 (서울시 2금고)	공금예금	394,350	-	2.02
	정기예금	1,000,000	12개월	4.22
		400,000	12개월	3.85
		500,000	3개월	3.28
	MMDA	1,190,000	수시입출금	3.23
합 계		3,484,350		

○ 본 기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것이나, 타 지방자치 단체의 재난구호 및 문화교류 등에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편중된 것으로 보이고, 기금재원을 활용한 사업의 다양성도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,

- 관행적인 사업추진을 지양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강화, 교류확대 등을 통한 시장 경쟁력 지원 및 지역발전 등 본 기금의 고유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참신한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전 문 위 원	정 찬 일	입법조사관	이 태 기
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